

[] 직업소개사업
[] 직업정보제공사업
[] 근로자공급사업

변경신고·등록·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직업정보제공사업: 7일 직업소개사업: 15일 근로자공급사업: 20일(변경허가), 7일(변경신고)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

신청인	사업소명(직업소개소명)	
	신고·등록·허가번호	전화번호
	소재지	
	대표자(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
변경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변경사유	
------	--

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2제1항, 제22조제2항, 제31조제2항,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신청)합니다

년 월 일

신고(신청)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직업안정기관의 장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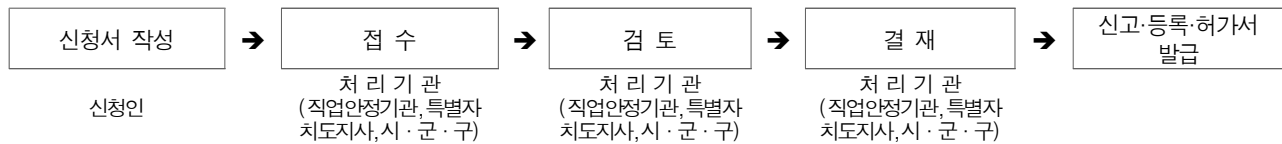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)	

유의사항

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·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,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「직업안정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